

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1. 25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0. 11. 19. 칠곡군수 제출
- 나. 회부일자: 2020. 11. 20. 회부
- 다. 상정일자: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
(2020. 11. 25. 상정·심사·의결)

2. 제출설명의 요지(제출설명자: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)

○ 제출이유

칠곡군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 삭제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남성태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

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